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1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82293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1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	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구합64300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4. 2.
판 결 선 고	2018. 5. 2.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 대하여,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이 2017. 2. 10. 한 취득세 9,978,23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845,410원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[redacted]시 [redacted]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1

청장이 2017. 2. 13. 한 취득세 18,967,31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1,592,820원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들은 당심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,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I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)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6-11

판사 김종기

판사 송혜정